## [별표 1] <개정 2013.12.30>

## **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·규모 등**(제36조 관련)

시설의 범위	설치자의 범위	규모
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**
치하는 제29조제4항에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해당하는 농업인 주택	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	
또는 어업인 주택		
2. 제29조제5항제1호에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·농업인 : 세대당 1천
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500제곱미터 이하
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	· 농업법인 : 법인당 7천
설 중 농업용시설	농업법인	제곱미터(농업진흥지역
		안의 경우에는 3천300
		제곱미터) 이하
3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·농업인 : 세대당 1천
치하는 제29조제5항제2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500제곱미터 이하
호 · 제3호에 해당하는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	·농업법인 : 법인당 7천
시설 또는 같은 항 제4	농업법인	제곱미터
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		
축산업용시설		
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하
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	
하는 집하장 · 선과장 ·	이에 준하는 임·어업인세	
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	대의 세대원인 임·어업인	
농수산물 유통·가공시		
설(창고·관리사 등 필		
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		
한다)		
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	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
	본법」에 따른 생산자단체,	
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	
에 설치하는 집하장 · 선	인 및 영농회사법인, 「수산	
과장·판매장·창고 또	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어	
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	^ = 0 - = = 0	
물 유통·가공시설	그 중앙회 또는 「농어업경	
	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
	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조	
	합법인	
6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		제한없음

치하는 법 제32조제1항		
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		
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		
편의시설 및 이용시설		
7. 제29조제2항제2호에	비영리법인	법인당 7천제곱미터(농업
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		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
시험 · 연구시설		천제곱미터) 이하
8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
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미터 이하
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	
	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	
	대의 세대원인 어업인, 농	
	업법인 및 「농어업경영체	
	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
	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	
	조합법인	
9.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	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	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
하는 제29조제5항제5호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제곱미터 이하
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	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	
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	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	
제외한 시설	대의 세대원인 어업인, 농	
	업법인 및 「농어업경영체	
	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	
	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	
	조합법인	

## 비고

- 1.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.
- 2.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면적을 합산한다.